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660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618,269백만원을 추경을 통해 감채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합 계	619,188	1,248,466	629,278	합 계	619,188	1,248,466	629,278
전입금	3,381	621,650	618,269	예수금원리금상환	50,981	50,981	-
				기타회계등 전출금	257,000	87,825	△169,175
이자수입	185	10,462	10,277	차입금 이자상환	7,320	38,920	31,600
				차입금 원금상환	300,000	474,200	174,200
예치금회수	615,622	616,354	732	일반운영비	50	50	-
				예치금	3,837	596,490	592,653

○ 수입 변경 : 총 6,293억원 증가

- 전입금 6,183억원 증가 : (당초) 34억원 → (변경) 6,217억원
 - ※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2조 1,419억원) 중 의무지출금(9,054억원)을 공제한 잔여금의 1/2인 6,183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 이자수입 103억원 증가 : (당초) 2억원 → (변경) 105억원
 - ※ 2019년 시금고(우리은행) 예치금리 변동으로 「2019 효율적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기예금을 신규 분산 가입하여 이자수입 증가
- 예치금회수 7억원 증가 : (당초) 6,156억원 → (변경) 6,163억원
 - ※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 지출 변경 : 총 6,293억원 증가

- 차입금 원금상환 1,742억원 증가 : (당초) 3,000억원 → (변경) 4,742억원
- 차입금 이자상환 316억원 증가 : (당초) 73억원 → (변경) 389억원
 - ※ 「서울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한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2019.4.30.)」에 따라 공채원금 총 2조 4,567억원(이자 2,997억원)이 우리시

채무로 이관되었고, 그 중 '19년 상환액 원금 1,742억원 및 이자 316억원 지출 증가

- 기타회계등전출금 1,692억원 감소 : (당초) 2,570억원 → (변경) 878억원
 - ※ 시의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 및 직접상환(2,058억원)에 따라 기타회계등전출금(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92억원 지출 감소
- 예치금 5,927억원 증가 : (당초) 38억원 → (변경)5,965억원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변경안의 개요

-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감채 기금 적립금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에 따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며, 2019년도 말 당초 조성액은 38억 3천 7백만원임.

〈2019년도 감채기금 당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현 재 액 [㉠]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 [㉢] + [㉠]
	수 입 [㉢]	지 출 [㉣]	증 감 [㉤]	
615,622,000	3,566,400	615,351,400	△611,785,000	3,837,000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감채기금 차입 자금의 상환,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관리 운용 경비 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

- 2019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당초 6,191억 8천 8백만원 이었으나, 201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감채 기금 적립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
- 조례 제3조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의무지출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인 6,182억 6천 9백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감채기금 적립금 내역]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A) : 2조 1,419억원
- 법정의무지출(B) : **905,373,313천원**(자치구 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금)
 - 자치구 교부금 540,124,796천원
 - 교육청 전출금 299,901,556천원
 - 타회계 전출금 65,346,961천원(도시지역분 재산세 35,565,324천원 + 지역자원 시설세 13,081,870천원 + 지역상생 전출금 16,699,766천원)
- 감채기금 적립금 산출 : $(A - B) \times 50\%$
 $1,236,536,709\text{천원} \times 50\% = \mathbf{618,269\text{백만원}}$ (50% 이상)

- 이로 인해 2019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1조 2,484억 6천 6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01.6%인 6,292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전입금은 6,182억 6천 9백만원 증가(33억 8천 1백만원 → 6,216억 5천만원) 하였으며,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102억 7천 7백만원(1억 8천 5백만원 → 104억 6천 2백만), ▷예치금 회수금이 7억 3천 2백만원(6,156억 2천 2백만원 → 6,163억 5천 4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음.

- 지출은 ▷도시철도공채 원금상환금 1,742억원(3천억원 → 4,742억원)과 이자상환금 316억원(73억 2천만원 → 389억 2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도시철도공채 직접상환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691억 7억 5천만원이 감소(2,570억원 → 878억 2천 5백만원)했으며, ▷예치금은 5,92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38억 3천 7백만원 → 5,964억 9천만원) 했음.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합 계	619,188	1,248,466	629,278	합 계	619,188	1,248,466	629,278
전입금	3,381	621,650	618,269	예수금 원리금상환	50,981	50,981	-
				기타회계등 전출금	257,000	87,825	△169,175
이자수입	185	10,462	10,277	차입금 이자상환	7,320	38,920	31,600
				차입금 원금상환	300,000	474,200	174,200
예치금 회수	615,622	616,354	732	일반운영비	50	50	-
				예치금	3,837	596,490	592,653

- 기금 지출내역 간 변동 폭이 큰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채무를 서울시 채무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원가대비 낮은 운임수입으로 매년 차입에 따른 부채²⁾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지하철 노후시설에

2) 서울교통공사 부채현황 : 2016년 4조 3,430억원, 2017년 4조 6,046억원, 2018년 5조 1,20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도철공채 상환
 약정 채무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시로 이관하였음³⁾.

- 이러한 채무이관의 배경에는 도철공채 상환 책임은 공채 발행기관에 있
 다는 감사원 지적(2010년, 2012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서울시 채무에 공채를 포함하도록 한데도 그 원인이 있음.
- 이로 인해 도철공채 원금 총 2조 4,567억원(이자 2,997억원)이 서울시 채무로
 이관되었고, 그 중 2019년 상환액 원금과 이자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공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확보되었으며 노후시설 적기교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철공채 상환채무를 연도별·순차적으로 이관한
 후 상환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공사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2020년
 상환채무(5,496억원) 까지 조기 이관할 계획임.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이관액	24,567	7,238	-	3,105	978	3,763	3,194	5,054	1,234
상환액	24,567	1,742	5,496	3,105	978	3,763	3,194	5,054	1,234

3) 서울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한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2019.4.30.)

- 한편, 2018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채비율은 5.84%로 전년도(6.09%) 대비 0.25%p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역시 평균 부채비율(6.68%) 보다 낮은 수준임.
- 부채는 7조 9,074억원으로 지난연도(7조 8,955억원) 대비 119억원 증가되었으며, 부채의 절대금액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비 율	순자산(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C-D)
2018년	135조 4,849	7조 9,074	5.84	127조 5,774	28조 2,824	26조 7,719	1조 5,105
2017년	129조 6,212	7조 8,955	6.09	121조 7,256	26조 4,975	24조 1,362	2조 3,613
증 감	5조 8,637	119	↓0.25p	5조 8,518	1조 7,849	2조 6,357	↓8,508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대부분(94%)은 시금고(우리은행)에 예치할 예정인 바, 이는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감채기금의 합목적적이고 적절한 운용방향이라 보기는 어려움.
- 시민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의 재정지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채기금의 과도한 예치금 적립이 오히려 기금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연 락 처
주 우 철	2180-8054

【 참고자료 】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2. 31.>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삭제 <2002. 11. 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3. 기타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채계정과 용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